

# 한양대학교 도메인(Domain) 관리 내규



2022년 4월

한양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 1조(목적)

본 내규는 한양대학교 도메인(Domain)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한양대학교 모든 구성원에게 원활한 교육·연구·행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메인(Domain) :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를 알기 쉽게 영문으로 표현한 것
2. 도메인네임시스템(Domain Name System) : 도메인 네임과 IP주소를 매핑해주는 시스템
3. 한양대학교 도메인 : 한양대학교를 대표하는 도메인(hanyang.ac.kr)

**제3조(도메인 신청 자격 및 지원범위)**

1. 한양대학교 도메인은 한양대학교에 소속된 재직 교직원과 재학생 중 정보통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2. 한양대학교 도메인은 한양대학교 고정 IP를 할당받은 학사/행정/연구 목적의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양대학교 교내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외부 호스팅 서버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지원한다.
3. 한양대학교 도메인은 대내외 공식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용도일 경우만 지원되며, 개인이나 개별 연구실에서 운영하는 서버의 접근 편의성 등의 관리용 도메인으로는 지원하지 않는다.
4. 한양대학교 도메인은 학교를 대표하는 도메인이므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개인의 상업목적 등으로 범위에 벗어나는 서비스를 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도메인 신청 방법)**

1. 한양대학교 도메인 IP주소는 고정 IP주소를 할당받은 사용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2. 한양대학교 도메인 형식은 [도메인이름].hanyang.ac.kr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적인 하위도메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3. 한양대학교 도메인은 영문자, 숫자, 하이픈(-) 중에서 선택한 최소 3자리 이상 문자만 사용 가능하나, 한양대학교 기관에서 교내 공식 대표 명칭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자릿수가 예외 될 수 있다.
4. 한양대학교 도메인명은 기간제 시스템(학교 포털 등)이나 대학의 공식적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명사는 신청 불가능하며, 중복 시 학교를 나타내는 이니셜(hy, erica 등)의 조합을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5. 한양대학교 도메인은 책임자 기준 최대 3개까지의 도메인명 발급을 허용한다.
6. 한양대학교 도메인은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한 개의 IP주소에 대해 최대 2개까지의 도메인명 발급을 허용한다.
7. 한양대학교 도메인은 신청자가 학교 포털 내 도메인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부서의 책임자(담당 교수 또는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도메인 사용 및 기간 연장)**

1. 한양대학교 도메인의 기본 사용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한양대학교 도메인의 기본 사용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 포털의 도메인 신청 메뉴를 통해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연장 신청이 되지 않은 도메인은 제8조에 의하여 서비스 중지 후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한다.

### 제6조(도메인 등록 정보 변경)

1. 한양대학교 도메인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자는 변경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2. 기 등록된 도메인에 대한 책임자, 사용자, 등록 정보 등 변경 정보는 한양인 포털 도메인 신청 메뉴를 통하여 변경되어야 한다.
3. 도메인 등록 정보 변경으로 인하여 신청자 및 책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도메인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도메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도메인 강제 중지 및 반납)

1. 한양대학교 도메인 사용 중 다음의 경우에는 도메인 사용이 즉시 중지될 수 있다.
  - 가. 해킹 등의 각종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 나.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다. 고정 IP주소가 반납되는 경우
  - 라. 도메인 사용자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 마. 신청 내역과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한양대학교 도메인 사용이 종료된 경우 신청자는 도메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3. 도메인 사용 중지 후 미반납된 도메인은 도메인 회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 제8조(도메인 회수)

1. 한양대학교 도메인 신청 후 6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사용을 중지한다.
2. 사용 중지된 도메인은 3개월간 휴면 관리되며, 중지 후 3개월 경과 시 자동 반납 처리한다.
3. 자동 반납 처리된 도메인은 신규 도메인에 준하여 신규 발급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도메인 사용자 의무)

1. 한양대학교 도메인명을 이용하는 서버는 '한양대학교 개인정보 보호 지침' 및 '한양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정보보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한양대학교 도메인 사용 중 교내 공식 기관의 대표성이 필요한 도메인을 사용 중인 경우, 신청 부서 책임자와 협의를 통하여 도메인 변경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